

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

○ 안건명 : **홍제천 상류 보행환경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**

분 야	채 택 의 견	비 고
조경	<p>1. 용역 명칭에 대한 사항</p> <p>(1) 용역 명칭이 홍제천 상류 보행환경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로 되어 있으나 용역비 산출은 실시설계만을 적용하고 있음. 따라서 명칭을 실시설계로 변경하거나, 설계요율을 용역범위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시기 바람.</p> <p>(2)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실시설계요율의 1.45배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는 실시설계요율의 1.35배</p> <p>2.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</p> <p>(1) 홍제천 상류 세검정구간은 북한산 아래 펼쳐진 문화의 산실로서 홍지문과 탕춘대터, 조지서터 뿐만 아니라 부암동 무계정사와 백석동천은 문화유산으로 귀중한 자원임. 따라서 본 사업은 하천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보행로 개설, 접근시설설치, 벽천설치 사업으로 방향을 설정하기보다는 소중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스토리가 있는 보행로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시기 바람.</p> <p>(2) 본 사업과 관련된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이 있으면 설계시 검토, 반영하도록 명시 바람.</p> <p>3. 현황측량 시행여부를 명확히 하시기 바람</p> <p>(1) 기본설계는 지형도 및 실측자료를, 실시설계는 측량성과품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, 별도로 제공하는 것인지. 본 용역에 포함하여 진행해야하는지 명확히 하고 필요시 용역비에 포함하기 바람.</p>	
종합의견	조건부채택	

2020년 2월 24일

심의위원 : 서 은 실

 (서은실)

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

○ 안건명 : **홍제천 상류 보행환경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**

분 야	채 택 의 견	비 고
조경	<p>1. 내용수정 및 보완</p> <p>(1) ‘1. 기본설계 가. 일반사항 1) 조사 및 자료수집을~검토한다.’에서 ‘. 지역의 정체성, 역사성, 문화성 등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한다.’ 내용추가(P7)</p> <p>(2) ‘1. 기본설계 가. 일반사항’에서 현장조사와 조사결과 반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‘4) 현장조사 및 결과 반영 . 계획구간의 각종 지장물조사(지하매설물, 지상시설물)에 대한 조사 및 사업으로 인한 영향여부를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한다. . 현장조사 하여 현지여건에 맞는 시설, 재료, 색채, 형태, 공법 등을 선정한다.’ 는 제목과 내용 2가지 추가 (p7)</p> <p>(3) ‘1. 기본설계 가. 일반사항’에서 관련사례 및 법률적 검토와 상위 계획 자료검토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‘5) 관련 법규·상위계획 및 관련 사례 조사·분석을 실시하여 계획에 반영한다.’ 내용추가</p> <p>(4) ‘가. 일반사항 나. 시설물(힐링길~) 3) 시설물 설계 . 시설물 계획 시 ~ 반영되어야 한다.’에서 상징조형물의 구조검토서도 확인되어야 함으로 ‘. 시설물 및 상징조형물 계획에 대한 구조검토서를 첨부하고,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’ 로 수정 (P8)</p> <p>(5) ‘가. 일반사항 나. 시설물(힐링길~) 5) 하천계획검토 . 시설물 설치에 ~.’에서 시설물, 식재 및 쉼터 조성 등으로 수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하는 바, ‘시설물 설치에 따른 하천 수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, 필요시 수리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.’로 수정 (p8)</p> <p>(6) ‘라. 조경설계 1) 지형설계 . 지형설계는 물의 흐름~’에서 생태적이고 유지관리적 측면에서 배수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‘. 지형설계는 물의 흐름이 자연 유하식으로 항상 흐를 수 있도록 계획하고, 배수설계 필요시 최대한 자연배수로 형식으로 설계한다.’ 는 내용 추가(p10)</p> <p>(7) ‘라. 조경설계 2) 식재설계 . 수목의 생리적~’에서 하천경관향상을 위해 ‘. 수목의 생리적,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하고, 4계절 경관을 고려하여 수목성상의 비율을 적절히 고려하여 설계한다.’ 로 수정(p10)</p>	

분야	채택의견	비고
	<p>(8) '라. 조경설계 2) 식재설계 ◦ 각종 구조물이 발생 ~에서 구조물 차폐 및 불량경관 보완은 수목, 디자인적 처리로도 가능하고 덩굴식물은 다른 식물을 피압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함으로 ' ◦ 각종 구조물이 발생 하여 인공시설의 과도한 노출이나 불량경관은 수목처리 등으로 해결한다.' 로 수정(p11)</p> <p>(9) 'IV. 성과품 작성'에서 제목부분을 'IV. 성과품 작성 및 납품'으로 수정하고, 내용에 ' 1)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「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」에 따라 작성하고, KS A 0005(제도통칙)등 도서작성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한다. 2) 각종 기술심의 및 자문회의 결과 및 주민요구·민원사항, 주요설계도면 협의 및 지시사항, 각종계산서 및 검토서 등 누락없이 도서에 반영한다.'는 내용 추가하고, 'CD-ROM 제출'에 대한 내용 및 수량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.(p13)</p>	
종합의견	조건부채택	

2020년 2월 24일


심의위원 : 전 우 태 (서명)

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

○ 안건명 : **홍제천 상류 보행환경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**

분 야	채 택 의 견	비 고
조경	<p>1. 기본설계</p> <p>나. 시설물의 규모, 배치, 형태 및 공법계획</p> <p>2) 경제성, 안전성 및 효율성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○ 시설물 재질 및 형태는 대상지내 기존 시설물의 상태를 비교분석하여 신규 시설물을 계획한다.(추가)</p> <p>3) 시설물 설계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○ 입면벽면녹화는 다양한 제품을 비교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공법을 반영 (추가)</p> <p>2. 실시설계</p> <p>다. 포장설계 4) 포장 재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○ 경화 및 변질변색이 쉽게 되는 화공제품 배제하고, 잦은 침수 후 투수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투수성 공법 외에 불투수성 포장제도 검토 반영할 것 (추가)</p> <p>라. 조경설계 2) 식재설계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○ 수목 식재 시 조류의 식이식물을 적극 반영하고 피난처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균식 처리한다. (추가)</p>	<p>과업내용서7p</p> <p>과업내용서8p</p> <p>과업내용서9p</p> <p>과업내용서10p</p>
종합의견	조건부채택	

2020년 2월 24일

심의위원 : 홍 태 식 

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

○ 안건명 : 홍제천 상류 보행환경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	<p>1. 기본설계(III. 과업의 세부지침)</p> <p>Sp. 1. 나. 5) 하천계획검토 내용중 “해당 구역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검토후 급격한 과업으로 인하여 설치/ 시공되는 시설물로 인한 수리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하천의 지수 방어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토 시설물을 계획하여야 한다”로 수정 필요</p> <p>Sp. 1. 나. 7) 배수계획 수립내용중 “배수계획은 해당 하천의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에 의거하여”로 내용 추가 필요</p>	
종합의견	조건부채택	

2020년 2월 5일

심의위원 : 김 인 동 (서명)

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

○ 안건명 : **홍제천 상류 보행환경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**

분 야	채 택 의 견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
조경	<p>1.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실시설계준공 2개월 전에 건설기술심의(설계심의)위원회 절차를 이행할 것(조경분야 총공사비 10억 원 이상)</p> <p>2. ‘2020년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사업’관련 시설예정지에 식재가 되지 않도록 해당 자치구와 긴밀히 협의할 것</p> <p>3. p3 ‘3. 업무협의 및 보고’에 아래 항목을 추가할 것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(1)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(Time Sheets)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left: 100px;">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(월)</p>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성 명 : 인 책임기술자 : 인</div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월/일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투입시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휴일(야간) 근무시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수행업무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/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.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..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/3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4. p.13 ‘IV. 성과품 작성’에 아래 사항을 추가할 것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(1) 서울시 건설기술심의 성과품 제출도서(기본설계 완료 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설기술심의요청서(양식) - 공사설명서(양식) - 유지관리(또는 사업계획)부서 검토의견서(양식) - 설계심의 점검표(양식) - ‘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(국토부고시)’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 설계도서 - 기타(새로운 기술·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사항은 제안설명서, 산출내역서, 수정공정예정표, 공사비의 절감 	월/일	투입시간	휴일(야간) 근무시간	수행업무	비고	3/1					.					..					3/31					
월/일	투입시간	휴일(야간) 근무시간	수행업무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
3/1																											
.																											
..																											
3/31																											

분 야	채 택 의 건	비 고
	<p>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등 추가, 목재테크, 그늘막 등 주요구조물은 구조계산 및 지반조사결과 첨부)</p> <p>5. 띄어쓰기, 오타자 등 수정할 것</p> <p>(1) 푸근도시국 → 푸른도시국</p>	
<p>토목</p>	<p>6. 하천정비기본계획, 하천개수계획, 배수계획 등 치수와 관련된 계획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설계조건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할 것</p> <p>7. 각 시설물의 규모 및 형태 결정시 지역 여건, 하천의 특성, 시민의 이용 편의성 및 쾌적성, 유지관리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</p> <p>8. ‘과업착수’ 에 아래 내용을 추가할 것</p> <p>(1)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.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실적통보 및 공개 등에 관한 자료를 발주 기관에 제출한다.</p> <p>9. 과업수행 시 계약상대자가 ‘작업일지’를 작성하도록 아래 내용을 추가할 것</p> <p>(1)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하며, 작업일지 양식은 ‘설계공모,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.</p> <p>10. ‘보고서 및 성과품’에 아래 내용을 보완 할 것</p> <p>(1)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용역 완료시 전체 용역성과품 3부 및 CD 1부(표준포맷)를 ‘서울도서관’에 제출하고,</p> <p>(1) 용역 준공 시 정보소통광장(http://opengov.seoul.go.kr/) 공개현황 (화면출력) 및 서울도서관에서 발급받은 제출확인서를 재무부서 제출 토록 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해당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</p>	

분야	채택의견	비고
전기	<p>11. '6) 전기설계'에 아래 사항을 추가할 것. (12p)</p> <p>(1) 다음의 법령 및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 수행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기공사업법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-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- 한전 전기공급약관, 한전공급규정 - 서울특별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<p>(2) 수전지점은 부하의 중심부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수전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전력공사측과 협의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한다.</p> <p>(3) 조명기구 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표준(KS C 8010 도로조명기구)에 따르고, 도로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눈부심 제한, 빛공해 방지, 조명기구 효율, 배광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.</p>	
종합의견	조건부채택	

2020년 2월 24일

심의위원 : 기술심사담당관 권 완 택 (서명)